

目 次

要 約	1
第 1 篇 序 論	51
第 1 章 研究의 背景 및 目的	53
第 1 節 問題의 提起	53
第 2 節 研究의 範圍	54
第 2 章 安全管理制度의 意義와 建設業에서의 脆弱性	55
第 1 節 安全管理制度의 意義	55
第 2 節 建設業의 産業安全管理 脆弱性	57
第 2 篇 우리나라의 産業安全關聯制度	63
第 3 章 産業安全保健法上の 建設産業安全管理制度	65
第 1 節 産業安全管理法의 沿革 및 發展過程	65
第 2 節 産業安全保健法上の 建設安全管理制度의 現況 및 問題點	68
第 3 節 建設産業安全制度의 接近方法	79
第 4 節 小 結	93

第 4 章 建設關聯法上の 建設産業安全管理制度	96
第 1 節 建設關聯法令上の 安全關聯 項目 및 規制 現況	96
第 2 節 小 結	107
第 5 章 建設業 下都給構造에 內在한 産業安全 脆弱点	110
第 1 節 問題의 提起	110
第 2 節 建設業 中層的 下都給構造의 概念과 發生 原因	112
第 3 節 建設下都給構造가 産業安全上の 問題를 惹起하는 메커니즘	115
第 4 節 實工事費를 蠶食하는 建設下都給去來의 類型과 實態	120
附 錄 外國의 下都給關聯制度	129
第 3 篇 外國의 建設安全關聯制度	137
第 6 章 日本의 建設産業安全關聯制度	139
第 1 節 日本의 建設災害豫防法制	139
第 2 節 執行 및 監督體制	153
第 3 節 建設事業場의 安全管理體制	161
第 4 節 日本의 建設安全 教育制度	173
第 5 節 日本의 建設安全制度가 주는 示唆點	186
附 錄 日本의 法定 産業安全保健教育課程 및 實施機關	191
第 7 章 獨逸의 建設産業安全關聯制度	198
第 1 節 獨逸建設業事業場 安全管理者制度	198
第 2 節 建設部門 安全管理者 教育訓練	204
第 8 章 英國의 産業安全關聯制度	222
第 1 節 英國의 建設安全制度 및 政策	222
第 2 節 建設事業場의 安全管理制度 및 體制	238

第 3 節	英國의 建設安全教育制度	256
第 4 節	英國의 建設安全制度가 주는 示唆點	265
附 錄	英國의 CDM 1994	269
第 9 章	美國의 建設産業安全關聯制度	317
第 1 節	問題의 提起	317
第 2 節	關聯法規	318
第 3 節	建設工事의 形態와 安全管理組織	324
第 4 節	建設工事關係者의 安全關聯 役割	328
第 5 節	安全關係者의 任務와 役割	342
第 6 節	災害豫防과 安全關係者의 役割	347
第 7 節	設計와 建設安全	352
第 8 節	美國의 建設安全制度가 주는 示唆點	358
第 10 章	國際勞動機構(ILO) 建設安全 關聯事項	361
第 1 節	國際勞動機構 安全保健活動等	361
第 2 節	國際勞動機構 産業安全保健分野 國際基準	370
第 3 節	建設安全保健關聯 國際基準의 主要內容	374
第 4 篇	우리나라 建設産業安全制度의 改善方案	403
第 11 章	우리나라 建設産業安全制度의 改善方案	405
第 1 節	建設安全保健法上의 産業安全關聯制度의 改善方向	405
第 2 節	建設工事 安全管理의 改善方向	416
第 3 節	下都給關聯制度의 各 問題點에 대한 改善方案	421
第 4 節	建設勤勞者의 福祉增進을 통한 建設産業安全 誘導	426

表 目 次

<표 2-1> 건설업 산업재해 추이	58
<표 2-2> 건설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(1996년 기준)	58
<표 2-3> 국가별 산업별 재해현황(1992년 기준)	61
<표 3-1> 영국 CDM제도상 공사참여자의 단계별 안전책무	83
<표 3-2> 건설현장과 제조업의 안전대책 3E측면의 특성 비교	86
<표 4-1> 안전관리 필요성 인식 시기	97
<표 4-2>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선행사항	97
<표 4-3> 건설공사 안전관리의 중요 단계	98
<표 4-4> 현행 안전법규의 종류 및 관련부서	99
<표 4-5> 건설관계 법규상 안전시공규정	100
<표 4-6> 건교부 소관 건설관련 법규상 안전관련 항목 및 내용	104
<표 4-7> 건설관련법상의 규제 성격에 따른 안전관련 규정항목 분포	108
<표 5-1> 건설하도급이 일반화되는 이유에 대한 기업측 견해(복수응답)	115
<표 5-2> 원도금액 대비 하도급공사액 비율	117
<표 5-3> 저가수주시 공사비 보전방법	119
<표 5-4> 하자발생 요인	119
<표 5-5> 건설공사 입찰방식별 계약실적(1993년)	122
<표 5-6> 건설하도급의 무면허·위장직영 실태	123

<표 5-7> 하도급대금 결정시 이중계약 유형	124
<표 5-8> 공사대금 수령기간(현금수령기준)	125
<표 5-9> 공사대금 중 어음수령 비율	125
<표 5-10> 어음결제기간	125
<표 6-1> 일본의 노동성 및 지방사무소 정원	155
<표 6-2> 건설업 감독 사업장의 위반내역	159
<표 6-3> 일본의 안전관련업무 담당자 선임기준	162
<표 6-4> 비계작업주임자의 선임기준	169
<표 6-5> 산업안전컨설턴트 관련 법령	170
<표 6-6> 건설사업장 안전활동의 역할 분담	173
<표 6-7> 능력향상교육(안위법 제18조의 2)중 신규안전보건추진자 교육내용	176
<표 6-8> 안전보건업무 종사자에 대한 능력향상 교육과정중 비계조립작업 종사자 교육내용	176
<표 6-9> 작업주임자 능력향상교육(정기 또는 수시)의 종류	177
<표 6-10>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교과과정(안위법 제602조의 2)	177
<표 6-11> 직장등의 안전보건교육 교과과정	178
<표 6-12> 산업재해재발방지교육 관련규정	179
<표 6-13> 산업재해 재발방지교육의 과목 및 범위	180
<표 6-14>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교육과정(1996년도)(예)	183
<표 6-15> 건설업노동재해방지협회의 교육내용(1997년도)(예)	185
<표 6-16> 일본의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 및 내용	191
<표 7-1> 사업장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최저한의 업무투여시간 (토목업분야)	201
<표 7-2> 건설부문 안전관리자 기초교육과정 A1 (처음 5 일) (건설안전 기초, 건설관련기술)(예)	206
<표 7-3> 건설부문 안전관리자 기초교육과정 A1 (처음 5 일 교육후 4주일후에 다시 5일 교육)(건설관련기술)(예)	207

<표 7-4> 건설부문 안전관리자 기초교육과정 BIT1 (“기초교육과정 A” 이수후 6개월간의 안전관리자 임무수행후 5일간 교육) (동기유발 기술)(예)	209
<표 7-5> 건설부문 안전관리자 기초교육과정 BIT2 (“기초교육과정 BIT1” 이수후 6개월간의 안전관리자 임무수행후 5일간 교육)(예)	211
<표 7-6> 건설부문 안전관리자 기초교육과정 AS (“기초교육과정 BIT2” 이수후 6개월간의 안전관리자 임무수행후 5일간 교육)(예)	213
<표 7-7> 건설부문 안전관리자 기초교육과정의 내용 비교(한국/독일)	219
<표 7-8> 건설부문 안전관리자 전문교육과정의 내용비교(한국/독일)	220
<표 8-1> HSWA(1974)의 주요내용	225
<표 8-2> MHSW(1992)의 주요내용	226
<표 8-3> 주요국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수	243
<표 8-4> HAZCON1 점검표	251
<표 11-1> 공제부금 납입원금 및 퇴직공제금 지급액 조건표(추산)	434

그 립 목 차

[그림 3-1] 산업안전보건법의 배열 구조	69
[그림 3-2] 건설업의 안전관리체제	72
[그림 3-3] 건설공사의 단계별 주요 과제 및 안전활동	82
[그림 3-4] 효과적인 안전관리의 요인	87
 [그림 5-1] 建設工事의 都給構造	121
 [그림 6-1] 일본의 건설안전대책의 주요내용	145
[그림 6-2] 일본의 전문건설업체 안전관리촉진사업 실시체제	148
[그림 6-3] 일본의 산업재해예방체제	154
[그림 6-4] 일본의 노동성 노동기준국 및 지방조직	157
[그림 6-5]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	163
[그림 6-6] 공동작업의 안전관리체제	164
[그림 6-7] 일본의 건설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	167
[그림 6-8] 건설사업장 안전관련업무 담당자 직무	169
[그림 6-9] 건축공사계획 작성자의 자격	181
[그림 6-10] 토목공사계획 작성자의 자격	185
 [그림 8-1] HSC의 건설실무위원회(CONIAC) 구성	238
[그림 8-2] 영국의 건설사업장 감독체제	239
[그림 8-3] HSE의 조직 구성	243

[그림 8-4] 영국의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보건 규제구조	250
[그림 9-1] 총괄계약자에 의한 건설공사	325
[그림 9-2] 턴키 계약형태	325
[그림 9-3] 건축 및 기술서비스를 포함한 건설경영관리계약형태	326
[그림 9-4] 대건설회사의 안전관련조직체계	327
[그림 9-5] 소규모 건설회사의 안전관리조직	328
[그림 9-6] 원도급자의 공조능력	332
[그림 9-7] 설정된 공사기간을 맞추는 관리감독자의 능력	334
[그림 9-8] 신규근로자의 작업 첫날 직반장의 안전영향요인들	336
[그림 9-9] 직반장들이 근로자들에게 작업완료기간을 부여하는 압박이 안전성적에 미치는 영향	338
[그림 9-10] 직반장의 리더십의 강약과 해당작업장의 상해사고와의 관계	340
[그림 9-11] 직반장들이 현장에 있는 총 시간	341
[그림 9-12] 공사기간에 맞추지 못할 때의 직반장의 반응	341
[그림 9-13] 공사규모별 전담안전부서장 임명과 안전작업수행실적 비교	348
[그림 9-14] 현장안전부서장의 임명방법에 따른 안전실적의 상관관계	349
[그림 9-15] 회사 안전부서장의 최종 보고자와 안전실적과의 관계	351
[그림 9-16] 현장안전부서장의 불안정한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권한부여와 안전성적의 상관관계	352
[그림 9-17] 건설공사 조직체계도에서 설계사의 위상과 역학적 관계	353
[그림 9-18] 설계사 선정시에 근로자 안전의 고려여부	355